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7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김승원·박홍배·김현정

이원택 • 김용민 • 조계원

이건태 • 박균택 • 박지원

서영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, 검사, 수사관서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, 수사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 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음.

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3조 등).

법률 제 호

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제4항 본문 중 "범위를"을 "범위, 보유 및 이용기간을"로 한다. 제8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8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5(통신이용자정보의 파기) ①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이용자정보 보 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- ②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 ~	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	4
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, 해당	
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통	
신이용자정보의 <u>범위를</u> 기재한	<u>범위, 보유</u>
서면(이하 "정보제공요청서"라	<u>및 이용기간을</u>
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	
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	
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	
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	
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없	
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	
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	
출하여야 한다.	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
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	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
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제83	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
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	
보 제공을 받은 검사, 수사관서	
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(이하	
"수사기관등"이라 한다)은 그	
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	

날(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)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메신저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~ ⑧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
<u>용기간</u>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83조의5(통신이용자정보의 파
기) ①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
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
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
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이 만료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
달성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이
용자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②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
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
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
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
<u>야 한다.</u>

③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의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